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8호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1. 제정 이유

전략적 소송 대응과 체계적 소송사무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 소관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 지침」을 제정

2. 주요 내용

가. 전략적 소송 대응체계 구축

1) 중요사건 지정·관리(안 제6조)

소송총괄관이 중요사건을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중요사건의 기준으로 소송가액, 정책에 중대한 영향 등을 규정

2) 소송위원회의 구성·기능(안 제7조)

사무처장, 법률자문관 등으로 소송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송위원회의 주요 기능으로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관련 중요사항 협의 등을 규정

3) 소송진행상황 정보 공유 강화(안 제13조)

소송수행자가 재판에서 진술한 소송서류, 재판부의 석명사항, 상대방 변론내용 등 소송진행상황을 소관부서에 통보·공유

나. 소송사무의 체계적 관리

1) 소송종류별 수행절차 규정(안 제11조~제21조 등)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 소송종류별로 필요한 수행절차를 규정

2) 소송단계별 각 부서의 역할 명확화(안 제11조~제21조 등)

소장의 접수, 답변서 제출 및 변론, 판결선고 후 처리 등 소송단계별로 소송 수행부서와 소관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

3) 소송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규정(안 제22조, 제23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 소송비용액 지급 청구 등 소송비용 회수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3. 참고사항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